

5. 建設技術管理法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3-163號, 1993. 9. 24

1. 개정이유

공사감리와 품질관리의 제도개선 및 건설기술 연구·개발을 촉진하고자 건설기술관리법중 개정법률이 1993년 6월11일 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행규칙의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건설기술개발 투자권고대상범위를 일반 및 특수건설업체의 경우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이 200억원이상 있는 자에서 500억원이상 있는 자로 조정하고, 건설기술용역업체의 경우 그 금액을 200억원이상으로 정함.
- 나.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건설공사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 지정함.
- 다. 학력경력자인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실시기관을 건설기술교육원으로 그 기간을 2주이상으로 정함.

- 라. 감리원의 현장배치방법과 감리업무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.
- 마.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중 보유장비부문에 대한 사항을 완화함.
- 바.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평가기준을 역사업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함.
- 사. 건설공사 품질시험시행규칙을 동법시행규칙에 통합하여 폐지함.

3. 의견제출

이 영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16절지를 세워서 작성)를 건설부장관(참조: 기술진흥담당관, 전화: 503-733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(2)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및 주소